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7934     |
| 의 퇴 인 | 임종득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5.04.16. |
| 추계번호  | 25D0682     |

#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까지 연장하고 위원회 운영기간을 2032년 6월까지 연장할 경우,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퇴직급여금, 인건비, 운영비 등에 144억 300만원(연평균 20억 5,8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2031 | 2032 | 계      | 연평균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
| 퇴직급여금 | 941   | 3,764 | 2,823 | 2,823 | 1,882 | 753  | 188  | 13,174 | 1,882 |
| 인건비 등 | 154   | 157   | 161   | 165   | 169   | 174  | 178  | 1,159  | 166   |
| 운영비   | 10.2  | 10.4  | 10.6  | 10.8  | 11.0  | 11.2 | 5.7  | 69.9   | 10    |
| 합계    | 1,105 | 3,932 | 2,995 | 2,999 | 2,062 | 938  | 372  | 14,403 | 2,058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6조<br>(퇴직급여금<br>지급신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| 2  | 법률 제16029호<br>1959년 12월 31일<br>이전에 퇴직한<br>군인의<br>퇴직급여금지급에<br>관한 특별법<br>일부개정법률 부칙<br>제2조(위원회의 구성<br>및 존속기간) | 위원회는 203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함          | 의무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6조<br>(퇴직급여금 지급 신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   | -              |
| 2  | 법률 제16029호 1959년 12월 31일<br>이전에 퇴직한 군인의<br>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<br>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위원회의<br>구성 및 존속기간) | ○    | -             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자는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·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던 자로서,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자 및 그 유족임
- 현행법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나 개정안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될 경우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자 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대일, 전역일, 최종계급 등의 복무기록이 필요하지만, 이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산출이 곤란함
  - 다만, 개인별 거주표 등의 별도 판독을 통해 최종계급, 전역일 등의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요건 확인이 가능함
- 추계에서는 최근 법 개정에 따른 접수기간 중 당시 파악되었던 퇴직급여금 미지급자 중 지급인원 비율과 현재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퇴직급여금 미지급자 수 및 지급단가를 활용하여, 개정안에 따른 지급여금 추가 지급자 수 및 지급단가를 가정함

- 개정안에 따라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며, 심의기간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퇴직급여금 지급은 2026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[표 2]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및 심의기간

| 지급신청 기한      | 심의기간 |     |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
|              | 심의   | 송달  | 재심의신청 | 재심의 | 송달  |
| 법 시행후 6개월 이내 | 90일  | 30일 | 30일   | 90일 | 30일 |

자료: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다만, 퇴직급여금의 소멸시효가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이며, 개정안 부칙에서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인 2032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~2032년까지 7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퇴직급여금 지급

- 「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」은 2004년 처음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4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, 그 동안 61,160명이 접수하여 47,822명에게 896억원의 퇴직급여금이 지급되었음

[표 3]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접수 및 지급 현황  
(단위: 명, 억원)

| 구분   | 접수기간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인원   | 인용     |     | 기각인원   | 지급기한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인원     | 금액  |        |             |
| 합계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| 61,160 | 47,822 | 896 | 13,338 | -           |
| 1~2차 | 1차 '05. 7. 1.~'08. 6.30. | 54,062 | 41,815 | 787 | 12,247 | ~ '11.12.31 |
| 3차   | 3차 '12. 1. 1.~'12.12.31. | 1,341  | 875    | 17  | 466    | ~ '16. 6.30 |
| 4차   | 4차 '19. 6.25.~'21. 6.30. | 5,757  | 5,132  | 92  | 625    | ~ '25. 6.30 |

자료: 국방부

- 국방부에 따르면, 4차 접수기간 중 지급된 인원을 2018년 개정 전 참전유공자 중 퇴직급여금 미지급자 약 9,000여명을 파악하였으며, 이 중 신청안내 우편발송을 통해 4,413명을 지급하여, 사전 파악된 미지급자 중 49.03%가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았음
- 퇴직급여금 지급자 중 719명은 신문광고 등 홍보를 보고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퇴직급여금을 지급 받음

[표 4] 4차 접수기간 퇴직급여금 지급자의 지급경로  
(단위: 명, 억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      | 찾아가는 안내서비스<br>(신청안내 우편접수후<br>신청) | 홍보<br>(신문광고/관보/국가전<br>광판 등 노출)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사전에 파악된 퇴직급여금<br>미지급자 수(A) | 9,000  | 9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,000 |
| 계 (접수)                     | 11,514 | 4,6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146                          | 5,757 |
| 인용(지급, B)                  | 10,264 | 4,4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,132 |
| 기각                         | 1,250  | 19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25   |
| B/A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| 49.03%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|

자료: 국방부

- 국방부는 현재 2018년 이후 국가보훈부에 신규등록된 유공자 중 퇴직급여금 미지급자 6,000여명과 6·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발굴 수훈자 중 퇴직급여금 미지급자 8,000여명 등 14,000여명의 퇴직급여금

미지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, 4차 접수기간과 유사한 인용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

- 국방부는 2027.7.31.일 6·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임무가 종료되고 국가보훈부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자 수를 최대한 파악하였으므로 홍보를 통한 인용인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음

□ 이에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퇴직급여금 추가지급자 수를 현재까지 파악된 퇴직급여금 미지급자 14,000명의 50%인 7,000명으로 가정함

□ 퇴직급여금 지급단가는 1인당 평균지급액 1,882,000원으로 가정하여 추계기간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31억 7,4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5] 퇴직급여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2년

| 구분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2031  | 2032  | 계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퇴직급여금 지급자 수(명) | 500   | 2,000 | 1,500 | 1,500 | 1,000 | 400   | 100   | 7,000  |
| 단가(천원)         | 1,882 | 1,882 | 1,882 | 1,882 | 1,882 | 1,882 | 1,882 | -      |
| 지급총액(백만원)      | 941   | 3,764 | 2,823 | 2,823 | 1,882 | 753   | 188   | 13,174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나.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

□ 국방부는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 2명(5급 1인, 7급 1인)을 증원하고 육·해·공군으로부터 각 1명씩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

□ 추계에서는 증원하는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을 추계함

-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재직기간을 고려하여, 5급은 22호봉, 7급은 17호봉을 가정하고, 호봉에 연동하는 정근수당, 성과상여금, 명절휴가비를 함께 고려함
-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5년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에 국회예산정책처가

전망한 공무원임금인상률 2.4%를 적용함

- 기관부담금은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5.4월)한 기관부담금요율<sup>1)</sup>을 적용하여 산정함

[표 6]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: 2026~2032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| 구분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2032 | 계   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인건비   | 136  | 139  | 143  | 146  | 149  | 153  | 157  | 1,023 |
| 기관부담금 | 18   | 18   | 19   | 19   | 20   | 21   | 21   | 136   |
| 합계    | 154  | 157  | 161  | 165  | 169  | 174  | 178  | 1,159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개정안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비는 최근 3년간 평균 위원회 운영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<sup>2)</sup>을 적용하여 산정함

- 현행법에 따른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,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비는 평균 982만 8000원

[표 7] 운영비 : 2026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2032 | 계   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운영비 | 10.2 | 10.4 | 10.6 | 10.8 | 11.0 | 11.2 | 5.7  | 69.9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까지 연장하고 위원회 운영기간을 2032년 6월까지 연장할 경우, 2026년부터 2032년까지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채용 기관부담금 요율(2025.4월)

| 구분         | 2026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2031   | 2032  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기관부담금요율(%) | 13.066 | 13.130 | 13.194 | 13.286 | 13.380 | 13.476 | 13.559 |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월)

| 구분         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2032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(%)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

추가재정소요는 퇴직급여금, 인건비, 운영비 등에 144억 3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8] 추가재정소요: 2026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2031 | 2032 | 계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퇴직급여금 | 941   | 3,764 | 2,823 | 2,823 | 1,882 | 753  | 188  | 13,174 |
| 인건비 등 | 154   | 157   | 161   | 165   | 169   | 174  | 178  | 1,159  |
| 운영비   | 10.2  | 10.4  | 10.6  | 10.8  | 11.0  | 11.2 | 5.7  | 69.9   |
| 합계    | 1,105 | 3,932 | 2,995 | 2,999 | 2,062 | 938  | 372  | 14,403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현재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퇴직급여금 미지급자 1만 4,000명 중 50%에게 지급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, 추가신청자 수나 인용률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전수연 | 김안나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전수연 | 02-6788-4667 | syjeon@assembly.go.kr |